

강의평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의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교원의 강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2017.11.21.>

제2조 (평가 대상) (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학부 및 대학원의 모든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11.21.>

② 총장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강의평가를 제외 할 수 있다(학점교류과목, 계절수업, 채플, 외부 현장실습, 교생실습, 대학생활 길라잡이 등).<신설 2017.11.21.>

제3조 (평가 내용) ① 평가 내용은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도, 강의계획 및 내용, 교수방법, 학습효과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세부평가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강의평가 설문지'와 같으며, 이론중심, 실습, 음악계열 등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 9. 23., 2016.11.16., 2017.11.21.>

제4조 (평가 방법) ① 평가 방법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한다.

② 평가 항목 외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별도의 주관식 항목을 둔다.

③ 강의평가 점수는 강좌 유형, 과목 이수구분, 수강생수 등을 고려한 조정계수를 활용한다. <신설 2008. 9. 23.>

제5조 (평가 시기) ① 평가는 중간강의평가와 정기강의평가(학기말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중간강의평가는 중간고사 전에 실시하고, 정기강의평가는 성적이의신청 기간 중 인터넷상에서 성적열람 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6. 11. 16.]

제6조 (평가 결과의 활용)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의평가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개별강좌 정기강의평가에 대한 강의개선보고서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1. 교원은 정기강의평가에 대한 '강의개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강의개선심층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가. 강의개선보고서: 전과목 작성. 단, 강의평가 점수가 계열별 평균 이상인 강좌는 작성을 면제한다.

나. 강의개선심층보고서: 전임교원의 경우 한 한기라도 강의평가 점수를 3.5 (음악계열 전공실기과목 3.8) 미만으로 받는 경우 작성. 단, 동일교수 동일 교과목은 통합하여 평가한다.

2. 동일과목 차기 강의계획서에 직전학기 강의개선보고서 또는 강의개선심층보고서에 따른 개선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3. 교무처는 위 1호에 따른 강의개선보고서 또는 강의개선심층보고서 제출결과를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미제출 교원에게는 사유서를 제출 받고 경고조치 한다.
- ② 중간강의평가 결과는 하반기 강의개선에 활용한다(강의개선보고서 작성 의무 아님).
- ③ 정기강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 및 과목배정 등에 활용한다.
 2. 비전임교원(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시간강사 제외)의 경우 개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를 3.5(음악계열 전공실기과목 3.8) 미만으로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심사에 반영한다. 시간강사는 1년 동안 위촉하지 않는다.
 3. 강의평가 점수가 3.5(음악계열 전공실기과목 3.8) 미만인 개별 강좌가 두 학기 연속 있거나, 개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가 한학기라도 3.0(음악계열 3.3) 미만인 경우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전문가 수업컨설팅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총장은 미 참석 전임교원에게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 참석 비전임교원의 경우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은 재임용심사에 반영하고 시간강사는 강의를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18. 8. 22.>
- ④ 학부 강의평가 개인별 평균점수가 상위권인 전임교원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매학기 선발하여 '강의평가 최우수 교수'로 시상한다.
 1. 선정인원: 전임교원의 5% 이내
 2. 선정방법: 수강생 규모, 강의평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선정
 3.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강의평가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교수의 우수강의 사례를 전체교수에게 공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1.]

- 제6조의2** (평가결과공개) ① 평가 결과는 전산처리하여, 평가기간 완료 후 해당 교원이 확인한다.
- ② 정기강의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시 강좌선택의 자료로 공개한다.
 - ③ 교양, 전공 및 전체 강좌의 분석 결과, 전체적인 경향과 점수의 분포, 기타 주요 특징 등은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1.]

- 제7조** (비밀 유지 및 보관) ① 학교 당국은 강의평가지 학생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②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③ 강의평가 결과는 전산서버에 저장하여 교무처에서 관리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 4. 10.>

- 제7조의2** (강의평가개선연구위원회) ① 강의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강의평가 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강의평가개선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에서 매 학년도 강의평가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 ③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7.11.21.]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11.21.>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지침의 개폐) 이 지침의 개폐는 교무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